|  |  |  |
| --- | --- | --- |
| **3.2.6 상표 심의규칙**  1995년 11월 2일 원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령 제37호로 공표, 2002년 9월 1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3호에 의거 제1차 개정, 2005년 9월 26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20호에 의거 제2차 개정, 2014년 5월 28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65호에 의거 제3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상표 심의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 함)과《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라 함)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의위원회(이하 상표심의위원회라 함)는 아래의 상표분쟁안건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1)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하 상표국이라 함)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상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안건  (2) 상표국의 등록불허 결정에 불복하여 상표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안건  (3) 상표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등록한 상표의 무효선고를 신청한 안건  (4) 상표국의 등록상표 무효결정에 불복하여 상표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안건  (5)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 또는 유지 결정에 불복하여 상표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안건.  상표 심의절차에서 전 항 제(1)호에서 지칭하는 재심의 신청 상표는 상표출원이라 하며, 제(2)호에서 지칭하는 재심의 신청 상표는 이의대상 상표라 하며, 제(3)호에서 지칭하는 무효선고 신청상표는 분쟁상표라 하며, 제(4), (5)호에서 지칭하는 재심의 신청 상표는 재심의 상표라 한다. 이 규정 중 상술한 상표는 모두 심의상표라 한다.  **제3조** 당사자가 상표심의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서면형식 또는 디지털전보문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디지털전보문 방식을 취하는 구체적 방법은 상표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4조** 상표심의위원회는 상표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심리한다. 단 실시조례 제60조 규정에 따라 구두심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두심의 구체적 방법은 상표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5조** 상표법, 실시조례 및 이 규칙에 의거한 상표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재정은 서면형식 또는 디지털전보문 형식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6조** 이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상표심의위원회가 심리하는 상표 심의안건은 합의제도를 실시하며 3명 이상의 홀수 상표 심의요원으로 합의팀을 구성하여 심리한다.  합의팀이 안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제7조**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가 실시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 심의요원의 기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8조** 상표심의기간에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자기의 상표권, 상표심의와 관련한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사회 공공이익, 제3자의 권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전제하에서 당사자 간에 스스로 또는 조정을 거쳐 서면으로 화해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화해를 달성한 안건은 상표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종결하거나 또는 결정이나 재정을 할 수 있다.  **제9조** 상표 심의안건의 공동신청인 또는공동소유 상표의 당사자가 상표심의 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실시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명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대표자가 심의에 참여하는 행위는 그가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대표자 변경, 심의신청 포기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심의 신청에 대한 인정은 반드시 피대표 당사자의 서면수권이 있어야 한다.  상표심의위원회의 서류는 대표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0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상표심의 수속을 하는 경우 중국에 장기 주소 또는 영업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한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다. 중국에 장기 주소 또는 영업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인가를 받은 상표대리기구에 의뢰해야 한다.  **제11조** 대리 권한이 변경되었거나 대리관계가 해제되었거나 또는 대리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상표심의위원회에 고지해야 한다.  **제12조**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은 본 안건 관련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장 신청과 수리**  **제13조** 상표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이 합법적 주체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2) 법정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에 속해야 한다.  (4) 법에 따라 규정에 부합되는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명확한 심의요구, 사실의거 및 이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6) 법에 따라 심의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14조** 상표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표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 수에 따라 상응하는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심의 상표가 양도, 이전, 변경 상황이 발생하여 이미 상표국에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공시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인은 상응하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상표국의 결성서를 의거로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의 결정서도 첨부해야 한다.  **제15조** 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통신주소, 연락인 및 연락전화. 심의신청에 피신청인이 있을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명칭과 주소지를 명기해야 한다. 상표대리기구에 상표심의 사항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상표대리기구의 명칭, 주소, 연락인 및 연락전화를 명기해야 한다.  (2) 심의상표 및 그 출원번호, 또는 초보적 심사결정번호, 등록번호 및 당해 상표를 게재한 《상표공고》 간행물 번호  (3) 명확한 심의청구와 의거 사실, 이유 및 법률의거.  **제16조** 상표심의신청이 이 규칙 제13조 제(1), (2), (3),(6)호에서 규정한 조건중의 하나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상표심의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7조** 상표심의 신청이 이 규칙 제13조 제(4), (5)호에서 규정한 조건중의 하나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실시조례와 이 규칙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보정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신청인은 보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보정해야 한다.  보정하여도 여전히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상표심의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하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규정한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조례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심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표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 상표심의 신청이 심사를 거쳐 수리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상표심의위원회는 30일 내에 신청인에게《수리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19조** 상표심의위원회가 수리한 상표심의신청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에 속하므로 실시조례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기각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상표 심의신청을 철회한 후 실시조례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일 사실과 이유로 심의신청을 다시 제출하였을 경우  (2) 상표심의위원회의 재정 또는 결정에 대하여, 실시조례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일 사실과 이유로 심의신청을 다시 제출하였을 경우  (3) 기타 수리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황.  등록 불허 재심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허가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전 항 제(2)호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상표심의위원회가 상표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0조** 당사자가 심의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 수에 따라 상응 수의 신청서, 답변서, 의견서, 대질 의견 및 증거자료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본 내용은 정본 내용과 같아야 한다. 전술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또 보정을 거쳤으나 그래도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심의신청에 피신청인이 있는 경우 상표심의위원회는 수리후 즉시 신청서 부본과 관련 증거자료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상표심의위원회에 답변서 및 그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규정한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않아도 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상표심의위원회가 상표국의 등록불허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의 안건을 심리하는 경우 원 이의자에게 참가하여 의견을 제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원 이의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상표심의위원회에 의견서 및 그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규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도 안건의 심리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 피신청인이 답변에 참가하거나 원 이의자가 등록불허 재심의 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합법적 주체 자격이 있어야 한다.  상표심의 답변서, 의견서 및 관련 증거자료는 규정된 서식과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기타 보정이 필요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심의위원회는 피신청인 또는 원 이의자에게 보정통지를 발송하며, 피신청인 또는 원 이의자는 보정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보정해야 한다. 보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정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의견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 당사자가 심의신청 또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관련 증거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답변서상 성명을 하고 동시에 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한 3개월 내에 일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또는 답변서상 성명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이 만료되어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자료의 보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기간 만료후에 생성되었거나 또는 기간 만료 전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기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상대방 당사자가 있는 경우 상표심의위원회는 당해 증거자료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증거자료 부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대질을 해야 한다.  **제24조** 당사자는 그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일일이 분류하여 번호를 달고 목차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증거자료의 원천, 특징의 구체적 사실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상표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증거자료를 접수한 후 목차명세서에 따라 증거자료를 대조해야 하며, 취급담당자는 수취영수증에 사인하고 일자를 명기해야 한다.  **제25조** 당사자의 명칭 또는 통신주소 등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표심의위원회에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증명서류을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상표 심의절차에서 당사자의 상표 양도, 전이가 발생한 경우 양수자 또는 승계자는 지체 없이 서면방식으로 관련 주체지위 승계에 대해 성명을 하고 후속 심의절차에 참가함과 아울러 상응하는 심의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서면성명을 하지 않아도 심의안건의 심리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상표심의위원회는 양수자 또는 승계자를 당사자로 간주하여 결정 또는 재정을 할 수 있다.  **제3장 심 리**  **제27조** 상표심의위원회가 심리하는 상표심의 안건은 합의제도를 실시한다. 단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건은 1명 상표심의요원이 단독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지 상표법 제30조와 제31조에서의 상표권 우선권 충돌과 관련되는 안건으로서, 심의 시 이미 권리 충돌이 제거된 경우  (2) 취소 또는 무효 선고 신청을 받은 상표가 이미 전용권을 상실한 경우  (3) 이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안건을 종료시켜야 하는 경우  (4) 단독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타 안건.  **제28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실시조례 제7조 및 이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의요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상표심의요원은 상표심의위원회가 기피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본 안건의 심리업무 참여를 당분간 정지해야 한다.  상표심의위원회가 결정, 재정을 한 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정, 재정의 유효성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단 삼표심의요원이 확실히 기피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심의위원회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9조** 상표심의위원회가 상표 심의안건을 심리할 시에는 실시조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규정에 따라 심리를 해야 한다.  **제30조** 등록불허 재심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인가한 상표에 대해 원 이의자가 상표심의위원회에 무효선고를 신청한 경우 상표심의위원회는 별도로 합의팀을 구성하여 심리해야 한다.  **제31조** 상표법 제35조 제4항, 제45조 제3항, 실시조례 제11조 제(5)호 규정에 따라 우선권 안건 심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상표심의위원회는 당해 상표심의 안건 심리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종료하고 안건을 종결짓는다.  (1) 신청인이 사망 또는 종료된 후 승계인이 없거나 또는 승계인이 심의권한을 포기한 경우  (2) 신청인이 심의신청을 철회한 경우  (3) 당사자 간에 스스로 또는 조정을 거쳐 합의를 달성하여 안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경우  (4) 심의를 종료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심의를 종료하는 경우 상표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종결짓고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3조** 합의팀이 안건을 심리하는 경우 합의기록을 작성하고 합의팀 구성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합의팀 구성원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합의기록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심리를 거처 종결한 안건은 상표심의위원회에서 법에 따라 결정, 재정한다.  **제34조** 상표심의위원회는 결정서, 재정서에 아래의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심의 요청사항, 분쟁 사실, 이유 및 증거  (2) 결정 또는 재정에서 인정한 사실, 이유 및 적용 법률의 의거  (3) 결정 또는 재정의 결론  (4)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후속 절차와 기간  (5) 결정, 재정 일자.  결정서, 재정서에는 합의팀 구성원이 서명하고 상표심의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35조** 당사자가 상표심의위원회의 결정, 재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또는 늦어서 15일 내에 당해 기소장 부본을 상표심의위원회에 송달하거나 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한 정보를 서면으로 상표심의위원회에 고지해야 한다.  상표심의위원회의 초보적 심사허가 또는 등록허가 결정 이외에 상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재정을 내린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인민법원의 응소 통지 또는 안건 당사자의 기소장 부본, 서면 기소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결정, 재정을 상표국에 이관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상표심의위원회가 당사자가 제출한 기소장 부본 또는 서면 기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인민법원의 응소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결정, 재정을 상표국에 이관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제36조** 1심 행정소송 절차 중에서 상표 심의결정, 재정에서 인용한 상표가 우선권을 상실함으로 인해 결정, 재정 사실의 인정, 법률 적용상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전제하에서 상표심의위원회는 종전의 결정이나 재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사실에 의거하여 상표심의 결정 또는 재정을 다시 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상표심의 결정, 재정서를 송달한 후 상표심의위원회가 문자오타 등 비 실질적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 당사자에게 정정 통지서를 발송하여 오류내용을 수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37조** 상표심의 결정, 재정이 인민법원의 유효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상표심의위원회는 합의팀을 다시 구성하여 지체 없이 심리하고 결정, 재정을 다시 내려야 한다.  재심의 절차 중에서 상표심의위원회는 당사자가 제기한 심의 청구와 법률 의거를 재심의 범위에 넣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보완 제출한, 안건 심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는 인정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대질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증거 규칙**  **제38조**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심의요구의 의거 사실 또는 상대측의 심의요구 반박에 의거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증거에는 서증, 물증, 시청자료, 전자데이터, 증인의 증언, 감정의견, 당사자의 진술 등이 포함된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당사자의 사실주장을 증명하기에 부족할 경우는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일방 당사자가 상대측 당사자가 진술한 안건사실에 대하여 인정함을 명확히 표시하였을 경우 상대측 당사자는 입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상표심의위원회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심의에 참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정을 당사자의 인정으로 간주한다. 단 특별 수권이 없는 대리인의 사실 인정이 상대측 심의요구에 대한 인정을 직접 도출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이다. 당사자가 현지에서 그 대리인의 인정에 대하여 부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9조**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의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주지하는 사실  (2) 자연 규칙 및 정리  (3) 법률의 규정 또는 기존 사실과 일상 생활경험 법칙에 근거하여 추정이 가능한 다른 사실  (4)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한 인민법원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5) 이미 효력을 발생한 중재기구의 재정에서 확인된 사실  (6) 이미 유효한 공증문서에서 증명된 사실.  전 항 (1), (3), (4), (5), (6)호와 상반되는 증거가 있어 반박에 충분한 경우는 제외이다.  **제40조** 당사자가 상표심의위원회에 서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본, 정본 및 부본을 포함한 원시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원시서류를 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시서류와 대조 확인한 복사본, 사진, 절취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가 보관한 서증원본 복사본이나 필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하고 당해 부서의 대조 확인을 거친 후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심의위원회에 물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물을 제공해야 한다. 원물 제공이 확실히 어려울 경우에는 원물과 대조 확인한 복제물 또는 당해 물증을 증명하는 사진, 녹화 등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원물이 수량이 많은 종류물일 경우에는 그 중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서증, 물증의 복제물, 사진, 녹화자료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동시에 상응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상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의대상 당사자는 관련 증거의 원물 또는 공증을 거친 복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제41조** 당사자가 상표심의위원회에 제공한 증거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외에서 또는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에서 형성되었고 상대방 당사자가 당해 증거의 진실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동시에 상응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상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공증, 인증 수속을 해야 한다.  **제42조** 당사자가 상표심의위원회에 외국어 서증 또는 외국어 설명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중문 번역문도 제출해야 한다. 중문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외국어 증거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상대측 당사자가 번역문의 구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부분의 중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쌍방 당사자가 인가하는 단위에 의뢰하여 전문이나 사용부분 또는 이의 부분을 번역하게 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가 번역의뢰에 대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표심의위원회가 전문 번역단위에 의뢰하여 전문이나 사용부분 또는 이의부분을 번역시킬 수 있다. 번역 의뢰비용은 쌍방 당사자가 각 50%를 부담하며 번역비용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측의 번역문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3조** 개개의 증거 증명력에 대하여는 아래의 면에서 심사 인정할 수 있다.  (1) 증거의 원본, 원물여부, 복사본, 복제품이 원본, 원물과 부합여부  (2) 증거와 본 안건사실의 관련 여부  (3) 증거 형식, 원천의 법률규정 부합여부  (4) 증거 내용의 진실여부  (5) 증인 또는 증거 제공자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존재여부.  **제44조** 심의요원은 안건의 전부 증거에 대하여 각 증거와 안건 사실의 관련 정도, 각 증거간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판단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있는 경우 증거교환 및 대질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아래의 증거는 단독으로 안건 사실을 인정하는 의거로 될 수 없다.  (1) 연령과 지력상태에 맞지 않는 미성년자의 증언  (2) 일방 당사자와 친족관계, 예속관계 또는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증인의 당해 당사자에 대한 유리한 증언, 또는 일방 당사자와 불리한 관계가 있는 증인의 당해 당사자에 대한 불리한 증언  (3) 구두심의에 참가하여 입증해야 하나 정당한 이유없이 참가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  (4) 수정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운 시청자료  (5) 원본, 원물과 대조하기 어려운 복사본 또는 복제품  (6) 일방 당사자 또는 타인의 수정을 거쳐 상대측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증거자료  (7) 단독으로 안건 사실의 인정의거로 될 수 없는 기타 증거자료.  **제46조**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하기 증거에 대하여 상대측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그 반박에 충족한 반증이 없는 경우 상표심의위원회는 그 증명력을 확인해야 한다.  (1) 서증원본 또는 서증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는 사본, 사진, 부본 및 절취본  (2) 물증 원물 또는 물증 원물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는 복제품, 사진, 녹화자료 등  (3) 기타 증거가 증명할 수 있는 동시에 합법적 수단으로 취득한, 의심할 바 없는 시청자료 또는 시청자료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는 복제품.  **제47조** 일방 당사자가 감정부문에 의뢰하여 취득한 감정결론에 대하여 상대측 당사자가 반박에 충족한 반증이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48조**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다른 일방 당사자가 인정하거나 제출한 반증이 반박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표심의위원회는 그 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다른 일방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동시에 반증을 제출하였고 상대측 당사자가 반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의 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49조** 쌍방 당사자가 동일 사실에 대하여 각각 반증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상대측의 증거를 부정하는 충족한 의거가 없는 경우 상표심의위원회는 안건 상황에 결부시켜 일방이 제공한 증거의 증명력과 다른 일방이 제공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동시에 증명력이 강한 증거를 확인한다.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상표심의위원회는 입증책임 배분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제50조**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신청서, 답변서, 진술 및 그 위탁대리인의 대리사에서 인정한 자기측에 불리한 사실과 인정 의거에 대하여 상표심의위원회는 확인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번복하고 동시에 충족한 반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1조** 상표심의위원회는 동일 사실에 대한 한개 이상 증거의 증명력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기타 기능부서가 그 직권에 따라 작성한 공문서류는 기타 서증보다 증명력이 강하다.  (2) 감정결론, 보관서류 및 공증 또는 등록을 거친 서증은 기타 서증, 시청자료 또는 증인의 증언보다 증명력이 강하다.  (3) 원본, 원물은 복사본, 복제품보다 증명력이 강하다.  (4) 법정 감정부문의 감정결론은 기타 감정부문의 감정결론보다 증명력이 강하다.  (5) 원시증거는 전달받은 증거보다 증명력이 강하다.  (6) 기타 증인의 증언은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증인이 제공한 당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언보다 증명력이 강하다.  (7) 구두심의에 참가하여 입증한 증인의 증언은 구두심의에 참가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보다 설득력이 강하다.  (8) 종류가 틀리고 내용이 일치한 한개 이상 증거의 증명력 1개 단독 증거보다 강하다.  **제5장 기간 및 송달**  **제52조** 기간에는 법정기간과 상표심의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이 포함된다. 기간은 실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53조** 당사자가 상표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또는 자료 일자는 직접 송달한 경우는 제출일에 준하고 우송한 경우는 우송 소인일에 준하며 우송 소인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표심의위원회의 실지 접수일에 준한다. 단 당사자가 실지 우송 소인일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우체기업을 제외한 택배기업을 통해 제출한 경우는 택배기업의 포스팅 일자에 준하며, 포스팅 일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표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접수한 날에 준한다. 단, 당사자가 실제 포스팅일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디지털전보문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표심의위원회의 전자시스템에 반영된 날에 준한다.  당사자가 상표심의위원회에 우송하는 서류는 교부증빙이 있는 우편물을 사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상표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신청인의 명칭을 명기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서면형식으로 된 경우는 상표심의위원회 보관기록에 준하며, 디지털전보문 방식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상표심의위원회 데이터베이스 기록에 준한다. 단 당사자가 상표심의위원회 보관서류, 데이터베이스 기록에 오류가 있음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4조** 상표심의위원회의 각종 서류는 우송, 직접 송달, 디지털전보문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 디지털전보문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대리기구에 의뢰하여 서류가 상표대리기구에 송달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상표심의위원회가 당사자에게 각종 서류를 송달하는 일자는 우송한 경우는 당사자가 접수한 우편 소인일에 준하고 우편 소인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우편 소인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를 발송한 날로부터 만 15일이 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당사자가 실제 접수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직접 송달한 경우에는 송달일에 준한다. 디지털전보문으로 송달한 경우 서류를 송출한 날로부터 만 15일이 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서류를 상술한 방식으로 우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 공시 반포일로부터 만 30일이 되면 당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상표심의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우송한 서류가 반송된 후 공시 방식으로 송달한 경우 후속 서류도 역시 공시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공시 송달 후 통신주소를 명확하게 알려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5조** 실시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의 안건의 피신청인 또는 원 이의자가 중국에 일상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인 경우 당해 심의상표 등록신청서에 명기된 국내 접수인이 삼표심의 절차 관련 법률문서의 접수를 책임지며, 상표심의위원회는 법률문서를 당해 국내 접수인에게 송달하였다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 항 규정에 따라 국내 접수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상표국의 기존 심사절차 중, 또는 당해 상표 관련 사항을 맨 마지막에 처리한 상표대리기구가 상표심의 절차 중에서의 관련 법률문서의 기명 수취 및 전달의무를 부담한다. 상표대리기구가 전항에서 기술한 관련 법률문서가 송달되기 전에 외국 당사자와 상표대리 관계를 해지한 경우에는 서면형식으로 상표심의위원회에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아울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상표심의위원회에 반환하여 상표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국이 송달한 마드리드 국제등록 상표는 상응하는 송달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으로 원인을 설명해야 하며 국제국의 문서 발송일이 15일 만료된 시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 방식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 방식을 취한다.  **제6장 부 칙**  **제56조** 상표 심의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업무직원이 직무수행에 게을리하거나 직원을 남용하거나 사리사욕을 도모하여 법을 어기고 상표 심의사항을 처리하거나 당사자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또는 부당 이익을 도모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57조** 당사자가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4년 5월 1일 전에 상표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상표심의위원회가 2014년 5월 1일 이후(5월 1일 포함, 하동)에 심리하는 안건은 개정후의 상표법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이의 재정에 불복하여 2014년 5월 1일 전에 상표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상표삼의위원회가 2014년 5월 1일 이후에 심리하는 안건은 당사자의 이의 및 재심의 주체자격은 개정 전의 상표법을 적용하며, 기타 절차문제와 실체문제는 개정 후의 상표법을 적용한다.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 당사자가 2014년 5월 1일 이전에 상표심의위원회에 분쟁을 제기하고 재심의 신청을 취소한 경우, 상표심의위원회가 2014년 5월 1일 이후에 심리하는 안건은 절차문제는 개정후의 상표법을 적용하며, 실체문제는 개정 전의 상표법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2014년 5월 1일 이전에 상표심의위원회에 신청을 제출한 상표심의 안건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심리기간을 기산한다.  **제58조** 상표심의 사항을 취급하는 서식은 상표심의위원회에서 제정 및 공표한다.  **제59조** 이 규칙에 대한 해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진다.  **제60조** 이 규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商标评审规则**  　　(1995年11月2日国家工商行政管理局第37号令公布；根据2002年9月17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3号第一次修订；根据2005年9月26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20号第二次修订； 根据2014年5月28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65号第三次修订)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商标评审程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以下简称商标法）和《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以下简称实施条例），制定本规则。  **第二条** 根据商标法及实施条例的规定，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商标评审委员会（以下简称商标评审委员会）负责处理下列商标评审案件：  　　（一）不服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商标局（以下简称商标局）驳回商标注册申请决定，依照商标法第三十四条规定申请复审的案件；  　　（二）不服商标局不予注册决定，依照商标法第三十五条第三款规定申请复审的案件；  　　（三）对已经注册的商标，依照商标法第四十四条第一款、第四十五条第一款规定请求无效宣告的案件；  　　（四）不服商标局宣告注册商标无效决定，依照商标法第四十四条第二款规定申请复审的案件；  　　（五）不服商标局撤销或者不予撤销注册商标决定，依照商标法第五十四条规定申请复审的案件。  　　在商标评审程序中，前款第（一）项所指请求复审的商标统称为申请商标，第（二）项所指请求复审的商标统称为被异议商标，第（三）项所指请求无效宣告的商标统称为争议商标，第（四）、（五）项所指请求复审的商标统称为复审商标。本规则中，前述商标统称为评审商标。  **第三条** 当事人参加商标评审活动，可以以书面方式或者数据电文方式办理。  　　数据电文方式办理的具体办法由商标评审委员会另行制定。  **第四条** 商标评审委员会审理商标评审案件实行书面审理，但依照实施条例第六十条规定决定进行口头审理的除外。  　　口头审理的具体办法由商标评审委员会另行制定。  **第五条** 商标评审委员会根据商标法、实施条例和本规则做出的决定和裁定，应当以书面方式或者数据电文方式送达有关当事人，并说明理由。  **第六条** 除本规则另有规定外，商标评审委员会审理商标评审案件实行合议制度，由三名以上的单数商标评审人员组成合议组进行审理。  　　合议组审理案件，实行少数服从多数的原则。  **第七条** 当事人或者利害关系人依照实施条例第七条的规定申请商标评审人员回避的，应当以书面方式办理，并说明理由。  **第八条** 在商标评审期间，当事人有权依法处分自己的商标权和与商标评审有关的权利。在不损害社会公共利益、第三方权利的前提下，当事人之间可以自行或者经调解以书面方式达成和解。  　　对于当事人达成和解的案件，商标评审委员会可以结案，也可以做出决定或者裁定。  **第九条** 商标评审案件的共同申请人和共有商标的当事人办理商标评审事宜，应当依照实施条例第十六条第一款的规定确定一个代表人。  　　代表人参与评审的行为对其所代表的当事人发生效力，但代表人变更、放弃评审请求或者承认对方当事人评审请求的，应当有被代表的当事人书面授权。  　　商标评审委员会的文件应当送达代表人。  **第十条** 外国人或者外国企业办理商标评审事宜，在中国有经常居所或者营业所的，可以委托依法设立的商标代理机构办理，也可以直接办理；在中国没有经常居所或者营业所的，应当委托依法设立的商标代理机构办理。  **第十一条** 代理权限发生变更、代理关系解除或者变更代理人的，当事人应当及时书面告知商标评审委员会。  **第十二条** 当事人及其代理人可以申请查阅本案有关材料。  **第二章 申请与受理**  **第十三条** 申请商标评审，应当符合下列条件：  　　（一）申请人须有合法的主体资格；  　　（二）在法定期限内提出；  　　（三）属于商标评审委员会的评审范围；  　　（四）依法提交符合规定的申请书及有关材料；  　　（五）有明确的评审请求、事实、理由和法律依据；  　　（六）依法缴纳评审费用。  **第十四条** 申请商标评审，应当向商标评审委员会提交申请书；有被申请人的，应当按照被申请人的数量提交相应份数的副本；评审商标发生转让、移转、变更，已向商标局提出申请但是尚未核准公告的，当事人应当提供相应的证明文件；基于商标局的决定书申请复审的，还应当同时附送商标局的决定书。  **第十五条** 申请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申请人的名称、通信地址、联系人和联系电话。评审申请有被申请人的，应当载明被申请人的名称和地址。委托商标代理机构办理商标评审事宜的，还应当载明商标代理机构的名称、地址、联系人和联系电话；  　　（二）评审商标及其申请号或者初步审定号、注册号和刊登该商标的《商标公告》的期号；  　　（三）明确的评审请求和所依据的事实、理由及法律依据。  **第十六条** 商标评审申请不符合本规则第十三条第（一）、（二）、（三）、（六）项规定条件之一的，商标评审委员会不予受理，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第十七条** 商标评审申请不符合本规则第十三条第（四）、（五）项规定条件之一的，或者未按照实施条例和本规则规定提交有关证明文件的，或者有其他需要补正情形的，商标评审委员会应当向申请人发出补正通知，申请人应当自收到补正通知之日起三十日内补正。  　　经补正仍不符合规定的，商标评审委员会不予受理，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未在规定期限内补正的，依照实施条例第五十七条规定，视为申请人撤回评审申请，商标评审委员会应当书面通知申请人。  **第十八条** 商标评审申请经审查符合受理条件的，商标评审委员会应当在三十日内向申请人发出《受理通知书》。  **第十九条** 商标评审委员会已经受理的商标评审申请，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不符合受理条件，应当依照实施条例第五十七条规定予以驳回：  　　（一）违反实施条例第六十二条规定，申请人撤回商标评审申请后，又以相同的事实和理由再次提出评审申请的；  　　（二）违反实施条例第六十二条规定，对商标评审委员会已经做出的裁定或者决定，以相同的事实和理由再次提出评审申请的；  　　（三）其他不符合受理条件的情形。  　　对经不予注册复审程序予以核准注册的商标提起宣告注册商标无效的，不受前款第（二）项规定限制。  　　商标评审委员会驳回商标评审申请，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第二十条** 当事人参加评审活动，应当按照对方当事人的数量，提交相应份数的申请书、答辩书、意见书、质证意见及证据材料副本，副本内容应当与正本内容相同。不符合前述要求且经补正仍不符合要求的，依照本规则第十七条第二款的规定，不予受理评审申请，或者视为未提交相关材料。  **第二十一条** 评审申请有被申请人的，商标评审委员会受理后，应当及时将申请书副本及有关证据材料送达被申请人。被申请人应当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三十日内向商标评审委员会提交答辩书及其副本；未在规定期限内答辩的，不影响商标评审委员会的评审。  　　商标评审委员会审理不服商标局不予注册决定的复审案件，应当通知原异议人参加并提出意见。原异议人应当在收到申请材料之日起三十日内向商标评审委员会提交意见书及其副本；未在规定期限内提出意见的，不影响案件审理。  **第二十二条** 被申请人参加答辩和原异议人参加不予注册复审程序应当有合法的主体资格。  　　商标评审答辩书、意见书及有关证据材料应当按照规定的格式和要求填写、提供。  　　不符合第二款规定或者有其他需要补正情形的，商标评审委员会向被申请人或者原异议人发出补正通知，被申请人或者原异议人应当自收到补正通知之日起三十日内补正。经补正仍不符合规定或者未在法定期限内补正的，视为未答辩或者未提出意见，不影响商标评审委员会的评审。  **第二十三条** 当事人需要在提出评审申请或者答辩后补充有关证据材料的，应当在申请书或者答辩书中声明，并自提交申请书或者答辩书之日起三个月内一次性提交；未在申请书或者答辩书中声明或者期满未提交的，视为放弃补充证据材料。但是，在期满后生成或者当事人有其他正当理由未能在期满前提交的证据，在期满后提交的，商标评审委员会将证据交对方当事人并质证后可以采信。  　　对当事人在法定期限内提供的证据材料，有对方当事人的，商标评审委员会应当将该证据材料副本送达给对方当事人。当事人应当在收到证据材料副本之日起三十日内进行质证。  **第二十四条** 当事人应当对其提交的证据材料逐一分类编号和制作目录清单，对证据材料的来源、待证的具体事实作简要说明，并签名盖章。  　　商标评审委员会收到当事人提交的证据材料后，应当按目录清单核对证据材料，并由经办人员在回执上签收，注明提交日期。  **第二十五条** 当事人名称或者通信地址等事项发生变更的，应当及时通知商标评审委员会，并依需要提供相应的证明文件。  **第二十六条** 在商标评审程序中，当事人的商标发生转让、移转的，受让人或者承继人应当及时以书面方式声明承受相关主体地位，参加后续评审程序并承担相应的评审后果。  　　未书面声明且不影响评审案件审理的，商标评审委员会可以将受让人或者承继人列为当事人做出决定或者裁定。  **第三章 审 理**  **第二十七条** 商标评审委员会审理商标评审案件实行合议制度。但有下列情形之一的案件，可以由商标评审人员一人独任评审：  　　（一）仅涉及商标法第三十条和第三十一条所指在先商标权利冲突的案件中，评审时权利冲突已消除的；  　　（二）被请求撤销或者无效宣告的商标已经丧失专用权的；  　　（三）依照本规则第三十二条规定应当予以结案的；  　　（四）其他可以独任评审的案件。  **第二十八条** 当事人或者利害关系人依照实施条例第七条和本规则第七条的规定对商标评审人员提出回避申请的，被申请回避的商标评审人员在商标评审委员会做出是否回避的决定前，应当暂停参与本案的审理工作。  　　商标评审委员会在做出决定、裁定后收到当事人或者利害关系人提出的回避申请的，不影响评审决定、裁定的有效性。但评审人员确实存在需要回避的情形的，商标评审委员会应当依法做出处理。  **第二十九条** 商标评审委员会审理商标评审案件，应当依照实施条例第五十二条、第五十三条、第五十四条、第五十五条、第五十六条的规定予以审理。  **第三十条** 经不予注册复审程序予以核准注册的商标，原异议人向商标评审委员会请求无效宣告的，商标评审委员会应当另行组成合议组进行审理。  **第三十一条** 依照商标法第三十五条第四款、第四十五条第三款和实施条例第十一条第（五）项的规定，需要等待在先权利案件审理结果的，商标评审委员会可以决定暂缓审理该商标评审案件。  **第三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终止评审，予以结案：  　　（一）申请人死亡或者终止后没有继承人或者继承人放弃评审权利的；  　　（二）申请人撤回评审申请的；  　　（三）当事人自行或者经调解达成和解协议，可以结案的；  　　（四）其他应当终止评审的情形。  　　商标评审委员会予以结案，应当书面通知有关当事人，并说明理由。  **第三十三条** 合议组审理案件应当制作合议笔录，并由合议组成员签名。合议组成员有不同意见的，应当如实记入合议笔录。  　　经审理终结的案件，商标评审委员会依法做出决定、裁定。  **第三十四条** 商标评审委员会做出的决定、裁定应当载明下列内容：  　　（一）当事人的评审请求、争议的事实、理由和证据；  　　（二）决定或者裁定认定的事实、理由和适用的法律依据；  　　（三）决定或者裁定结论；  　　（四）可以供当事人选用的后续程序和时限；  　　（五）决定或者裁定做出的日期。  　　决定、裁定由合议组成员署名，加盖商标评审委员会印章。  **第三十五条** 对商标评审委员会做出的决定、裁定，当事人不服向人民法院起诉的，应当在向人民法院递交起诉状的同时或者至迟十五日内将该起诉状副本抄送或者另行将起诉信息书面告知商标评审委员会。  　　除商标评审委员会做出的准予初步审定或者予以核准注册的决定外，商标评审委员会自发出决定、裁定之日起四个月内未收到来自人民法院应诉通知或者当事人提交的起诉状副本、书面起诉通知的，该决定、裁定移送商标局执行。  　　商标评审委员会自收到当事人提交的起诉状副本或者书面起诉通知之日起四个月内未收到来自人民法院应诉通知的，相关决定、裁定移送商标局执行。  **第三十六条** 在一审行政诉讼程序中，若因商标评审决定、裁定所引证的商标已经丧失在先权利导致决定、裁定事实认定、法律适用发生变化的，在原告撤诉的情况下，商标评审委员会可以撤回原决定或者裁定，并依据新的事实，重新做出商标评审决定或者裁定。  　　商标评审决定、裁定送达当事人后，商标评审委员会发现存在文字错误等非实质性错误的，可以向评审当事人发送更正通知书对错误内容进行更正。  **第三十七条** 商标评审决定、裁定经人民法院生效判决撤销的，商标评审委员会应当重新组成合议组，及时审理，并做出重审决定、裁定。  　　重审程序中，商标评审委员会对当事人新提出的评审请求和法律依据不列入重审范围；对当事人补充提交的足以影响案件审理结果的证据可以予以采信，有对方当事人的，应当送达对方当事人予以质证。  **第四章 证据规则**  **第三十八条** 当事人对自己提出的评审请求所依据的事实或者反驳对方评审请求所依据的事实有责任提供证据加以证明。  　　证据包括书证、物证、视听资料、电子数据、证人证言、鉴定意见、当事人的陈述等。  　　没有证据或者证据不足以证明当事人的事实主张的，由负有举证责任的当事人承担不利后果。  　　一方当事人对另一方当事人陈述的案件事实明确表示承认的，另一方当事人无需举证，但商标评审委员会认为确有必要举证的除外。  　　当事人委托代理人参加评审的，代理人的承认视为当事人的承认。但未经特别授权的代理人对事实的承认直接导致承认对方评审请求的除外；当事人在场但对其代理人的承认不作否认表示的，视为当事人的承认。  **第三十九条** 下列事实，当事人无需举证证明：  　　（一）众所周知的事实；  　　（二）自然规律及定理；  　　（三）根据法律规定或者已知事实和日常生活经验法则，能推定出的另一事实；  　　（四）已为人民法院发生法律效力的裁判所确认的事实；  　　（五）已为仲裁机构的生效裁决所确认的事实；  　　（六）已为有效公证文书所证明的事实。  　　前款（一）、（三）、（四）、（五）、（六）项，有相反证据足以推翻的除外。  **第四十条** 当事人向商标评审委员会提供书证的，应当提供原件，包括原本、正本和副本。提供原件有困难的，可以提供相应的复印件、照片、节录本；提供由有关部门保管的书证原件的复制件、影印件或者抄录件的，应当注明出处，经该部门核对无异后加盖其印章。  　　当事人向商标评审委员会提供物证的，应当提供原物。提供原物有困难的，可以提供相应的复制件或者证明该物证的照片、录像等其他证据；原物为数量较多的种类物的，可以提供其中的一部分。  　　一方当事人对另一方当事人所提书证、物证的复制件、照片、录像等存在怀疑并有相应证据支持的，或者商标评审委员会认为有必要的，被质疑的当事人应当提供或者出示有关证据的原件或者经公证的复印件。  **第四十一条** 当事人向商标评审委员会提供的证据系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形成，或者在香港、澳门、台湾地区形成，对方当事人对该证据的真实性存在怀疑并有相应证据支持的，或者商标评审委员会认为必要的，应当依照有关规定办理相应的公证认证手续。  **第四十二条** 当事人向商标评审委员会提供外文书证或者外文说明资料，应当附有中文译文。未提交中文译文的，该外文证据视为未提交。  　　对方当事人对译文具体内容有异议的，应当对有异议的部分提交中文译文。必要时，可以委托双方当事人认可的单位对全文，或者所使用或者有异议的部分进行翻译。  　　双方当事人对委托翻译达不成协议的，商标评审委员会可以指定专业翻译单位对全文，或者所使用的或者有异议的部分进行翻译。委托翻译所需费用由双方当事人各承担50％；拒绝支付翻译费用的，视为其承认对方提交的译文。  **第四十三条** 对单一证据有无证明力和证明力大小可以从下列方面进行审核认定：  　　（一）证据是否原件、原物，复印件、复制品与原件、原物是否相符；  　　（二）证据与本案事实是否相关；  　　（三）证据的形式、来源是否符合法律规定；  　　（四）证据的内容是否真实；  　　（五）证人或者提供证据的人，与当事人有无利害关系。  **第四十四条** 评审人员对案件的全部证据，应当从各证据与案件事实的关联程度、各证据之间的联系等方面进行综合审查判断。  　　有对方当事人的，未经交换质证的证据不应当予以采信。  **第四十五条** 下列证据不能单独作为认定案件事实的依据：  　　（一）未成年人所作的与其年龄和智力状况不相适应的证言；  　　（二）与一方当事人有亲属关系、隶属关系或者其他密切关系的证人所作的对该当事人有利的证言，或者与一方当事人有不利关系的证人所作的对该当事人不利的证言；  　　（三）应当参加口头审理作证而无正当理由不参加的证人证言；  　　（四）难以识别是否经过修改的视听资料；  　　（五）无法与原件、原物核对的复制件或者复制品；  　　（六）经一方当事人或者他人改动，对方当事人不予认可的证据材料；  　　（七）其他不能单独作为认定案件事实依据的证据材料。  **第四十六条** 一方当事人提出的下列证据，对方当事人提出异议但没有足以反驳的相反证据的，商标评审委员会应当确认其证明力：  　　（一）书证原件或者与书证原件核对无误的复印件、照片、副本、节录本；  　　（二）物证原物或者与物证原物核对无误的复制件、照片、录像资料等；  　　（三）有其他证据佐证并以合法手段取得的、无疑点的视听资料或者与视听资料核对无误的复制件。  **第四十七条** 一方当事人委托鉴定部门做出的鉴定结论，另一方当事人没有足以反驳的相反证据和理由的，可以确认其证明力。  **第四十八条** 一方当事人提出的证据，另一方当事人认可或者提出的相反证据不足以反驳的，商标评审委员会可以确认其证明力。  　　一方当事人提出的证据，另一方当事人有异议并提出反驳证据，对方当事人对反驳证据认可的，可以确认反驳证据的证明力。  **第四十九条** 双方当事人对同一事实分别举出相反的证据，但都没有足够的依据否定对方证据的，商标评审委员会应当结合案件情况，判断一方提供证据的证明力是否明显大于另一方提供证据的证明力，并对证明力较大的证据予以确认。  　　因证据的证明力无法判断导致争议事实难以认定的，商标评审委员会应当依据举证责任分配原则做出判断。  **第五十条** 评审程序中，当事人在申请书、答辩书、陈述及其委托代理人的代理词中承认的对己方不利的事实和认可的证据，商标评审委员会应当予以确认，但当事人反悔并有相反证据足以推翻的除外。  **第五十一条** 商标评审委员会就数个证据对同一事实的证明力，可以依照下列原则认定：  　　（一）国家机关以及其他职能部门依职权制作的公文文书优于其他书证；  　　（二）鉴定结论、档案材料以及经过公证或者登记的书证优于其他书证、视听资料和证人证言；  　　（三）原件、原物优于复制件、复制品；  　　（四）法定鉴定部门的鉴定结论优于其他鉴定部门的鉴定结论；  　　（五）原始证据优于传来证据；  　　（六）其他证人证言优于与当事人有亲属关系或者其他密切关系的证人提供的对该当事人有利的证言；  　　（七）参加口头审理作证的证人证言优于未参加口头审理作证的证人证言；  　　（八）数个种类不同、内容一致的证据优于一个孤立的证据。  **第五章 期间、送达**  **第五十二条** 期间包括法定期间和商标评审委员会指定的期间。期间应当依照实施条例第十二条的规定计算。  **第五十三条** 当事人向商标评审委员会提交的文件或者材料的日期，直接递交的，以递交日为准；邮寄的，以寄出的邮戳日为准；邮戳日不清晰或者没有邮戳的，以商标评审委员会实际收到日为准，但是当事人能够提出实际邮戳日证据的除外。通过邮政企业以外的快递企业递交的，以快递企业收寄日为准；收寄日不明确的，以商标评审委员会实际收到日为准，但是当事人能够提出实际收寄日证据的除外。以数据电文方式提交的，以进入商标评审委员会电子系统的日期为准。  　　当事人向商标评审委员会邮寄文件，应当使用给据邮件。  　　当事人向商标评审委员会提交文件，应当在文件中标明商标申请号或者注册号、申请人名称。提交的文件内容，以书面方式提交的，以商标评审委员会所存档案记录为准；以数据电文方式提交的，以商标评审委员会数据库记录为准，但是当事人确有证据证明商标评审委员会档案、数据库记录有错误的除外。  **第五十四条** 商标评审委员会的各种文件，可以通过邮寄、直接递交、数据电文或者其他方式送达当事人；以数据电文方式送达当事人的，应当经当事人同意。当事人委托商标代理机构的，文件送达商标代理机构视为送达当事人。  　　商标评审委员会向当事人送达各种文件的日期，邮寄的，以当事人收到的邮戳日为准；邮戳日不清晰或者没有邮戳的，自文件发出之日起满十五日，视为送达当事人，但当事人能够证明实际收到日的除外；直接递交的，以递交日为准。以数据电文方式送达的，自文件发出之日满十五日，视为送达当事人；文件通过上述方式无法送达的，可以通过公告方式送达当事人，自公告发布之日起满三十日，该文件视为已经送达。  　　商标评审委员会向当事人邮寄送达文件被退回后通过公告送达的，后续文件均采取公告送达方式，但当事人在公告送达后明确告知通信地址的除外。  **第五十五条** 依照实施条例第五条第三款的规定，商标评审案件的被申请人或者原异议人是在中国没有经常居所或者营业所的外国人或者外国企业的，由该评审商标注册申请书中载明的国内接收人负责接收商标评审程序的有关法律文件；商标评审委员会将有关法律文件送达该国内接收人，视为送达当事人。  　 依照前款规定无法确定国内接收人的，由商标局原审程序中的或者最后一个申请办理该商标相关事宜的商标代理机构承担商标评审程序中有关法律文件的签收及转达义务；商标评审委员会将有关法律文件送达该商标代理机构。商标代理机构在有关法律文件送达之前已经与国外当事人解除商标代理关系的，应当以书面形式向商标评审委员会说明有关情况，并自收到文件之日起十日内将有关法律文件交回商标评审委员会，由商标评审委员会另行送达。  　　马德里国际注册商标涉及国际局转发相关书件的，应当提交相应的送达证据。未提交的，应当书面说明原因，自国际局发文之日起满十五日视为送达。  　　上述方式无法送达的，公告送达。  **第六章 附 则**  **第五十六条** 从事商标评审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违法办理商标评审事项，收受当事人财物，牟取不正当利益的，依法给予处分。  **第五十七条** 对于当事人不服商标局做出的驳回商标注册申请决定在2014年5月1日以前向商标评审委员会提出复审申请，商标评审委员会于2014年5月1日以后（含5月1日，下同）审理的案件，适用修改后的商标法。  　　对于当事人不服商标局做出的异议裁定在2014年5月1日以前向商标评审委员会提出复审申请，商标评审委员会于2014年5月1日以后审理的案件，当事人提出异议和复审的主体资格适用修改前的商标法，其他程序问题和实体问题适用修改后的商标法。  　　对于已经注册的商标，当事人在2014年5月1日以前向商标评审委员会提出争议和撤销复审申请，商标评审委员会于2014年5月1日以后审理的案件，相关程序问题适用修改后的商标法，实体问题适用修改前的商标法。  　　对于当事人在2014年5月1日以前向商标评审委员会提出申请的商标评审案件，应当自2014年5月1日起开始计算审理期限。  **第五十八条** 办理商标评审事宜的文书格式，由商标评审委员会制定并公布。  **第五十九条** 本规则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负责解释。  **第六十条** 本规则自2014年6月1日起施行。 |